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7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 위기사유 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’를 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조항을 변경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으로 위임근거 조항 ‘제2조의제6호’에서 ‘제2조의제8호’로 변경
- 나.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근거 법조항 구체화(제2조, 제5조, 제4조)
 - 제2조, 제5조: 상위법령 반복내용 삭제
 - 제4조: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 ‘제12조제4항’ 명시
- 다. 용어 및 표현 정리(제3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(정의) 및 제12조(긴급지원심의위원회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2. 7. 28. ~ 8. 1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4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2.8.2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제8호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조제6호”를 “제2조제8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“아동”을 “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미적용하고”를 “적용하지 않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3호 중 “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”를 “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긴급지원심의위원회)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. 다만,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<u>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“위기상황”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.</p> <p>2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「긴급복지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2조제6호</u>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기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제8호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<삭 제></p> <p>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----- ----- <u>제2조제8호</u> ----- ----- -----</p>

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3. 취학 전 아동의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. 다만, 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,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

4. ~ 12. (생략)

13.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긴급지원심의위원회)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----. ----- 적용하지 않고-----
--

4. ~ 12. (현행과 같음)

13. -----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-----

제4조(긴급지원심의위원회)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. 다만,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<삭제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
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홍예은
연 락 처	02-3153-8836